**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 (추가) 약정서**

㈜ 대영 알앤티(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을’이라함)은 ‘을’이 ‘갑’에게 납품 하는 물품등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약정한다.

제1조 [지급방법]

‘갑’이’을’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한 은행 지점에 ‘을’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납품대금을 입금시키고 동 계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납품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갑’의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 한다. 이와 같은 입금 이후에 발생할 여하한 사고 또는 기타 행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갑’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자기비용 부담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갑’에게 하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이 경우 ‘갑’이 입금시키고, 입금시킨 은행으로부터 교부 받은 무통장 입금표(송금부분) 또는 은행의 지급확인원이 날인된 거래선별 지급 명세서를 ‘을’의 영수증(입금표)에 갈음한다.

제2조[예금계좌개설]

‘을’은 제1조에 정한 은행에 ‘을’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갑’은 전항의 개설 통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하자가 없음이 ‘갑’에 의하여 확인 될 때 까지‘을’에 대한 납품 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약속어음(전자어음) 교부 방법]

‘갑’이 ‘을’에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할 경우에는 신한은행 3공단로 지점을 ‘을’을 위하여(대리하여) 이 어음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신한은행 3공단 지점에 개설된 ‘을’명의의 추심어음등 기입장에 기재하며 이와 같은 어음 수령시 납품대금은 ‘을’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갑’의 지급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보관 추심어음계좌 개설]

‘을’은 신한은행 3공단로 지점에 그의 명의로 추심어음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개설 약정서와 계좌번호, 상호, 대표자, 거래인감 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을’이 신한은행 3공단로 지점에 계좌 개설시 제출하는 인감은 별첨양식상의 인감과 다른인감에 의거 어음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한은행 3공단로 지점이 불응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갑’은 전항의 개설 통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하자가 없음이 ‘갑’에 의하여 확인 될 때 까지‘을’에 대한 납품 대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어음지급 후의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한 납품 대금으로 신한은행 3공단지점이 ‘갑’으로부터 ‘을’을 위해 어음을 수취한 때에는 ‘갑’의 대금지급 의무는 전부 이행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 ‘을’과 신한은행 3공단지점간에 어음의 보관, 반환, 추심 등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는 ‘갑’과 신한은행간에 체결한 납품 대금 지급 사무 위탁에 관한 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한은행 3공단 지점이 책임을 지므로 ‘을’은 상기 모든 사고에 관한 책임 문제를 신한은행 3공단 지점과 협의하여 해결하고 ‘갑’에 대하여 하등의 법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좌개설에 관한 변동 사항 통보의무]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거 ‘을’이 ‘갑’에게 통보한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그 통보를 접수하기 전까지 종전의 약정 내용에 의거 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은 이에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을의 채권자]

‘을’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에 대하여 여하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있어서 ‘을’은 ‘갑’이 요구하는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갑’이 부담하게 된 모든 비용과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제8조[변경]

이 약정은 쌍방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해지]

이 약정은 쌍방 서면 합의시에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고 ‘갑’’을’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시에는 그 상대방이 이 통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되는 날부터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본계약서와의 관계]

본 약정은 기본 계약서의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본계약서에서 규정된 사항은 기본 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합의 해지]

‘갑’과’을’이 본 약정 체결이전에 이미 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종전의 약정은 해지키로 합의 한다.

제12조[보정]

본 약정과 기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갑’과’을’이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보정해 나가기로 합의 한다.

제13조[시행일자]

이 약정은 년 월 일부터 유효하며,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대영 알앤티**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7길 29(장동)

대표이사 이 중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503-86-02025

을)

첨부서류: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

**납품 대금 지급에 관한 (추가) 약정서**

|  |  |  |
| --- | --- | --- |
| (갑)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7길 29(장동) |
|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영 알앤티 |
| 대 표 자  | 대표이사 이 중 호(인) |
| 사업자등록 번호 | 503-86-02025 |
|  |
| (을) | 주 소  |  |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